

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김태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363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4.

발의자 : 김태희 의원 외 19명

1. 제정이유

- 이 조례는 안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사전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, 용어의 정의,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(안 제1조~제3조)
-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명시함(안 제4조)
- 감염병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, 감염병 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(안 제5조~제6조)
-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,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설치 등을 규정함(안 제7조~제9조)
-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규정함(안 제10조~제13조)
-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(안 제14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1

4.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3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6. 입법예고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○ 입법예고기간 : 2020. 3.18 ~ 3.24 (6일간)

7. 기타 참고사항 : 불임4 (관련부서 검토의견서)

[붙임1]

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건강에 위해(危害)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감염병” 이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다.
2. “감염병환자”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, 안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2.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
3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
5.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6.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
7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8.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
9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
10.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
11.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·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감염병의 예방·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2. 주요 감염병 예방·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
 3.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방안
 4.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
 5.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5조(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)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(이하 “대책반”이라 한다)을 구성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되, 이를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.
1. 시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 2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
 3.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
 4.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5.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
 6.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관련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역학조사)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,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

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) ① 시장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28조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.

제9조(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)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

2. 격리소·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·운영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.

제10조(감염병환자 등의 관리)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(病床)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(自家)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.

1.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

2.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

제11조(감염병환자 등의 입원통지)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3조(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, 생활지원, 감염병 진단 및 진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감염병의 발생 감시, 예방·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등에 조력하는 의료인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와 감염병 예방·관리를 위해 어린이가 자택격리되었을 경우에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4조(협력체계 구축)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,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, 안산시교육청,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2개 이상의 시·군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·군수의 의견을 들어 업무 조정 등을 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안산시의회
입	시의원	김태희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77)
안		
자		

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-363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. 4. 24.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

□ 주요골자

- 안 제3조제2항제7호의 “양성”을 “교육”으로, 같은 항 제8호 중“약품”을 “약품•비품”으로 수정하고, 같은 항 제9호 삭제
- 안 제5조의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로 수정
- 안 제6조의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서 “대행할 수 있다”를 “대행 한다”로 수정
- 제8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, 제9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삭제
- 안 제13조를 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“생활지원” 삭제

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2항제7호 중 “양성”을 “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약품”을 “약품·비품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)”을 “(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)”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위기관리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 중 “대행할 수 있다”를 “대행 한다”로 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.

제11조(원안의 제13조)제1항 중 “치료비, 생활지원”을 “치료비”로 한다.